##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65 발의연월일: 2021. 1. 5.

발 의 자: 맹성규·김승원·박성준

박찬대 · 송영길 · 신동근

윤준병 • 이광재 • 전혜숙

허종식 · 황운하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 도건설사업 및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 지조성사업등"이라 함)을 시행하는 경우에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 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규모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부산, 인천 등 물류 수송량이 많은 주요 수출입 항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한 결과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에 항만배후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항만의 물류 수송을위한 노외주차장의 설치 근거가 없음.

이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주차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물류수송을 위하여 항만에 출입하는 화물차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앞으로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교역량 증가로 인하여 항만 물류수송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비례한 화물차 통행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항만배후단지조성 시 적정규모의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등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포함시켜 항만배후단지 개발 시 화물차 주차공간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도시재개발사업"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만법」 제46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
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	른 노외주차장) ①
업, 산업단지개발사업, <u>도시재</u>	
<u>개발사업</u> , 도시철도건설사업,	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	<u>업</u>
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	
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u>.</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